

## 방문간호사 특별약관

### 제1조(보장대상업무)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업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보장대상업무라 함은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의 업무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된 간호사,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993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보장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됩니다.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 또는 보험회사에서 승인되어 전산에 피보험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업무배상책임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만 해당됩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더불어 아래의 손해로 생긴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금전 및 재물손해 사고에 기인한 손해
2. 상해사고가 아닌 질병감염 등에 기인한 손해
3. 피보험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의사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진료보조행위 포함)로 생긴 손해
4. 피보험자의 친족에게 입힌 손해

5. 미용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결과에 관한 손해
6. 식중독으로 인한 신체장해
7. 피간병인(동거인을 포함합니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이나 금전의 분실, 도난 손해
8. 피보험자의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손해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